

일본 막부 편찬 국회도(國繪圖)에 표현된 국경과 독도영유권 인식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팀장

I. 서론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면서 외무성, 내각관방, 시마네현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이 무력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국제법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618년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고, 막부의 공인 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에도시대 초기 17세기 중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논문 투고일: 2020. 10. 13. 심사 완료일: 2020. 11. 16. 게재 확정일: 2020. 11. 25.

시마네현 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는 쇼호(正保), 분세이(文政), 덴포(天保)의 오키국회도(隱岐國繪圖), 쇼호국회도(正保國繪圖)에 울릉도 도해의 기재가 보이고, 그 도중에 있는 독도는 울릉도를 도해할 때 기항지가 되거나, 강제 잡이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곳으로 회도의 기재에는 ‘울릉도예의 도해’, ‘울릉도까지의 도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독도도 명확히 일본령으로 인식 되었다고¹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쓰시마에 기재된 조선 부산에의 거리 기재도 이국인 조선을 의식한 것보다는 부산에 있는 왜관을 의식해서 기재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쇼호국회도와 오키국회도에서의 울릉도의 기재는 막부가 울릉도, 독도를 이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오키국회도에 표기된 울릉도예의 도해 기재와 다른 국회도(國繪圖)에서 부산에의 도항 기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가와무라(川村博忠)의 국회도 연구²에서는 게이쵸(慶長), 간에이(寬永), 쇼호, 겐로쿠(元祿), 덴포 시기의 국회도가 군사적 통치 성격을 가진 막부의 정치적 지도사업으로 볼 수 있고, 국경문제 해결을 중시한 관찬지도이다. 이케우치 사토시³, 나이토 세이쥬⁴ 울릉도 도해면허에 관한 연구에서 도해면허 형식은 정식 무역 허가장인 주인장과 다르며 1회성 한정의 도해면허로 돛토리번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에도시대의 토지제도와 타국과의 무역제도의 연구에 의해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를 배령받았다는 사실을 허위로 입증하고 있다.

일본 관찬지도 연구에서 게이쵸국회도(慶長國繪圖), 쇼호국회도에는 오키 섬까지만 표시되고 막부체제의 전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한 겐로쿠국

1 日本側作製地図にみる竹島(3)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g.html> (검색일:2020. 6. 6.)

2 川村博忠, 1977, 「元禄年間國絵図改訂と新國絵図の性格について」, 『人文地理 29-6』, 川村博忠, 2014, 『江戸幕府撰日本総図の研究』, 古今書院.

3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社

4 内藤正中, 2000, 「竹島渡海免許をめぐる問題」, 『竹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第二章』, 多賀出版.

회도(元祿國繪圖), 덴포국회도(天保國繪圖)에도 울릉도와 독도 표시가 없는 것은 에도막부가 이 두 섬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게이초국회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쇼호국회도는 각 영주에게 자신의 영지 지도 작성을 명령하여 만든 지도로 호키번에 독도와 울릉도를 지도에 그리지 않았던 것은 에도막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⁶

간에이, 쇼호, 겐로쿠, 교호(享保) 시기의 국회도 등의 17~18세기의 지도는 삼도(규슈, 시코쿠, 혼슈) 영토관에서 사도(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영토관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고 평가하는 논문도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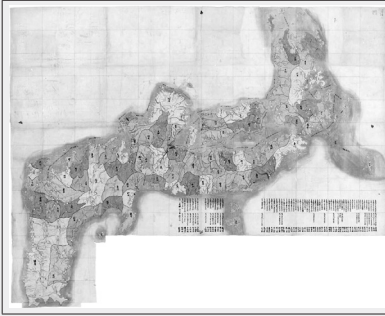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인 17세기 고유영토설과 울릉도·독도 배령에 대해 에도막부의 국회도 제작 과정과 국경 분쟁 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에도시대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독도 배령의 허구에 대해 분석한다. 일본 정부가 울릉도 도해면허, 오키국회도에서의 울릉도 도해 기재 등의 이유를 들어 17세기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에도시대 토지제도, 무역제도, 국회도 제작 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 일본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에 대해 분석한다.

5 이상태, 2013,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15, 영남대 독도연구소,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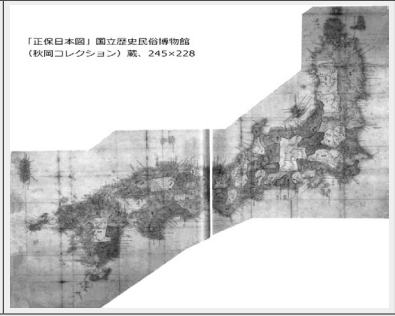
6 호사카 유지, 2005,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7, 84쪽.

7 신동규, 2012, 「근대이행기 일본의 관찬지도로 본 영토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일본연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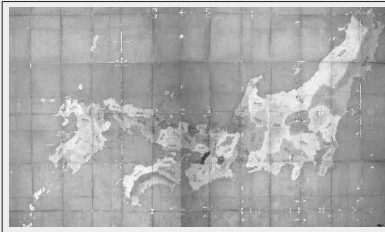
II. 에도막부의 국회도(國繪圖) 제작 목적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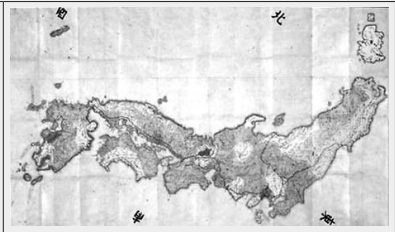
〈그림 1〉 간에이국회도(寛永國繪圖) 8



〈그림 2〉 쇼호국회도(正保國繪圖) 9



〈그림 3〉 겐로쿠국회도(元祿國繪圖) 10



〈그림 4〉 교호국회도(享保國繪圖) 11

에도막부는 전국의 영주에게 5번의 국회도와 향장 제출을 명하였고 1604년 제출된 향장과 게이초국회도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제작된 사본이 남아있지만, 동일본 제국에 대한 향장으로 추측되는 국고(國高)의 기록과 개별 검지 기록 이외는 남아있지 않고 전국적인 군고(郡高)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게이초국회도 이후 4번에 걸친 국회도 제작에서 국회도와 향장은 비교적 사본과 원본이 남아있고, 군고도 정리할 수 있었다.¹² 이와

8 국회도서관 소장, http://windows2012.bakufu.org/kanei_japan.htm (검색일:2020. 8. 6)

9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https://matome.naver.jp/odai/2136439442534894801> (검색일:2020. 7. 30)

10 메이지대학도서관 아시다문고 소장

11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https://matome.naver.jp/odai/2136439442534894801> (검색일:2019. 8. 15)

12 旧国郡別石高の変遷 <https://www.weblio.jp/wk/pja/content> (검색일:2020. 8. 30)

같이 국회도와 향장의 제출은 통일정권에 있어 개별 다이묘의 영내 상황과 생산고를 장악할 수 있어 다이묘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¹³ 막부가 대규모로 국회도를 수납한 것은 게이쵸(1600년대), 간에이(1639년), 쇼호(1651, 1669년), 겐로쿠(1702년), 교호(1725년) 시기의 5번을 걸쳐 행해졌다.

게이쵸(慶長)시기 향장, 국회도가 서일본으로 한정된 것은 이 사업이 서일본 다이묘 관리 대책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도 제작으로 국가통치의 정당성을 표명하는 군권 강화 행위로 보인다.¹⁴

게이쵸국회도 제작의 표현에서 최대 특징은 양식이 통일되지 않았던 점이다. 국이 단위가 되어 묘사된 점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국군제를 바탕으로 국의 영역이 아니라 영주의 지배영역이 추가되는 형태로 묘사 범위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 개정되어 전국 일률적 양식으로 제출이 명해지게 된 것은 1644년부터 실시된 쇼호국회도 작성 사업이다.¹⁵

에도막부는 1633년(간에이 10년) 막부 성립 이래 처음으로 전국에 순견사(巡見使)를 파견해서 제국의 국회도를 수납했다. 이 때 순견사 파견은 전국을 고키(五畿)·난카이(南海), 간토(關東), 추고쿠(中國), 규슈(九州), 오슈(奥州)·마쓰마에(松前), 홋고쿠(北國)의 6구로 나누어 6조로 각구를 분담·순찰하였다.¹⁶ 시기 경우, 막부가 순견사를 파견하여 각지의 국정을 관찰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순견사가 쇼군에게 제출한 지도라는 점이 다르다.¹⁷

간에이국회도(寬永國繪圖)는 정치, 교통에 중점을 둔 일본지도로 국별 구획과 제국(諸國)의 성 아래를 도시하였고, 또한 에도막부 관찬 일본지도로 정치, 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도에는 지명 기재가 적지만 도로와 항로를 빨간 선으로 극명하게 도시하고 성 아래 주요 거리와 항구를 기재하고 있

13 和泉清司, 2005, 11, 「近世初期一國郷帳の研究－正保郷帳を中心に－」, 『地域政策研究 第8巻 第2号』, 高崎経済大学地域政策学会, 3쪽.

14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日本地圖史』, 吉川弘文館, 86쪽.

15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87쪽.

16 川村博忠, 1981, 「江戸幕府撰日本図の編成について」, 『人文地理 第33巻 第6号』, 44쪽.

17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88쪽.

다. 육로의 주요 지점 간에는 그 이정, 항구간에는 항로의 이정을 전국적으로 기재하고 노선의 도하에는 나루터, 도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막부가 시마하라(島原) 난(1637년) 이후에 교통정보를 중시한 군사목적의 실용도로 보인다.¹⁸

간에이국회도는 무쓰[陸奥: 아오모리현, 이와테현]를 최단 북쪽으로 해서 에조지[越前: 에치마시]를 포함하지 않았고 남단은 오스미제도(屋久島)까지였다.

국회도에 요구된 정보 중, 육해의 교통 정보는 특히 상세히 기입되었고 가도, 노선을 6촌 1리(21600분의 1)로써 그려지고 주요 도로와 분기점을 구별하고, 1리마다 1리산의 기호를 표시하고 고개·난소(難所) 기입의 지시, 도하지점에서의 도하방법, 강폭, 수심을 표시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세심한 지시에 의해 국회도양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6촌 1리의 축적은 그 후 국회도제작에도 답습되어 에도막부 국회도의 일관된 기준이 되었다.

쇼호국회도 제작 사업은 게이쵸국회도 개정이 명시되어 있고 막부 하달 회도 기준은 축척, 도시(圖示), 묘사, 주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게이쵸국회도 조달 경우, 막부는 국군지도 제작하면서 군별 전담고 기재, 국경기재 유의사항을 지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매우 막연한 통달이었지만, 쇼호국회도는 회도기준, 제작요령이 자세하게 지시되었다. ‘회도서부후해변지각(繪圖書付候海辺之覺)’은 국회도 제작 중 특히 항구, 해변의 주기의 요령을 상세하게 지시한 세부적인 기준이다.²⁰

쇼호국회도 제작 사업에서는 비로소 축척 통일기준이 지시되어 막부는 최초로 일본총도의 집성을 도모하였다. 각국의 회도원(繪圖元)은 국회도 개정에 있어 국내 타영주에 대해 쇼호시기 이후 변동 지역의 유무를 문의하는 변지 조화가 필요하였다. 막부는 개정요강 안에서 국내 타영주의 영토의 변지가 있으면 회도원은 그 영주로부터 부분 수정도의 제출을 받아 그것을

18 川村博忠, 1981, 위의 글, 47쪽, 平成24年度 池田家文庫繪図展, 「日本六十余州図の世界」, 2쪽.

19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91쪽.

20 川村博忠, 「正保国絵図の調進と絵図様式の統一化について」, 62쪽.

총괄해서 일국회도(一國繪圖)의 개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²¹ 그리고 회도원으로부터 각 영주에의 변지 조회의 요령, 국경 및 군경 논지의 처리, 국경의 상호 확인 등의 주요한 개정 상의 절차가 지시되었다.

당초부터 막부는 국경 취급을 중시하고 국경은 인국 쌍방에 의한 상호 확인을 요구했고 국회도 개정은 논쟁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²² 그리고 국회도 사양서 전반적인 기준과는 별도로 ‘국경회도사양지각(國境繪圖仕様之覺)’을 하달해서 국경선을 명확히 하여 쌍방에 중첩되지 않도록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1645년 이후 지형의 변화 및 논쟁지의 결착을 막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회도 작성의 기준으로 쇼호시기 이후의 지형 변화 기입, 쇼호 이후 논쟁지의 결착의 유무 확인, 촌고(村高)는 일촌 단위로 배령고만 기입, 사사령(寺社領)에 대해 일촌 단위로 기입, 50년 이전부터의 신전 조사 등이 있다.²³

쇼호국회도는 게이초국회도와 달리 기본적으로 일국 일장(一國一杖)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류큐(오키나와)는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마미제도(奄美大島)부근, 오키나와 본도부근, 미야코(宮古)·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부근 등 3분할로 제작되었다.²⁴ 그리고 오키섬은 이즈모(出雲)와 같은 지도 안에 넣어서 그렸고, 일국일장의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게 그리고 있다.²⁵

류큐와 마쓰마에(남훗카이도)는 막부 관찬지도인 쇼호국회도에 처음으로 지도로 제작되었다. 게이초국회도는 서일본 중심이었고, 이 시기에는 류큐는 가고시마번의 통치 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지역은 그려지지 않았고, 간에이(寛永)순견사에 의한 국회도가 집대성된 ‘일본육십여주도’에도 두 지역은 보이지 않았다.²⁶ 성회도 제출과 조사에 의해 막부는 군사

21 川村博忠, 1977, 앞의 글, 38쪽.

22 川村博忠, 2006, 「元禄国絵図における国境筋の表現要領について」, 『歴史地理学 42-3(199)』, 29쪽.

23 半田和彦, 1981, 3, 「元禄国絵図製作覚書」, 『秋田博研報6号』, 25쪽.

24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앞의 글, 92쪽.

25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앞의 글, 92쪽.

26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92쪽.

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영주의 군사 거점에 대해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존재하는 사원, 당사, 강, 길, 연못, 도서(島嶼) 등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기재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²⁷

쇼호국회도 특징은 에조지가 관찬지도에 처음으로 기재되었고, 한반도 동단이 기재되어 조선이라는 국명, 부산해리는 기재가 보인다. 류큐는 쓰시마번이 류큐국회도(琉球國繪圖)를 조달하였으나 쇼호국회도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는다.²⁸

류큐국회도가 조달되었어도 국회도에 반영을 안하고 조선을 기재한 것은 에도막부가 쇄국정책을 펼치면서도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에도막부의 자세가 잘 반영되어 있다.²⁹ 겐로쿠국회도(元祿國繪圖)에서는 쓰시마의 북방에 한반도 남단을 그려 넣어, 그 서남단 초량항(草梁港)의 지명과 같이 왜관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겐로쿠국회도에 그려진 범위는 북쪽 변경에서 쇼호국회도보다 진전이 되었지만 남쪽 변경에서는 아에야마제도까지의 류큐열도 전체를 도형으로 그려 넣었다.

겐로쿠시기는 막번체제의 완성기로 5대 쇼군 쓰네요시가 문치주의를 내걸고 쇼군 전제적인 정치를 수행한 시기이다. 그래서 겐로쿠국회도 사업은 막부의 지시가 세부까지 관철되었고 국회도의 규격, 양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그 내용은 간결화 되었다. 겐로쿠국회도에서는 모든 지방이 균일하게 군별 색, 각군의 석고, 군의 촌수를 병기하고 각 현의 총 석고와 촌수를 함께해서 관명으로 기재되었다.

겐로쿠국회도는 1697년부터 제작되어 1699년 3월 이키국회도(壹岐國繪圖)가 처음으로 진상되어 1702년 12월 하리마노쿠니(播磨國)이 최종 제출되

27 近世絵図地図資料集成第15巻(フルカラー版:正保国絵図集成・東日本篇)https://www.kagakushoin.com/products/detail.php?product_id=1796 (검색일:2020. 7. 30)

28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111~112쪽.

29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111쪽.

어 6년간 제작기간이 걸렸다. 난부령(南部領), 수오(周防), 나가토(長門), 이시미(石見), 탄고(丹後) 순으로 제출되었고 8월 센다이국회도(仙台國繪圖) 현상을 최후로 1700년 1월 쓰시마, 2월 마쓰마에국회도(松前國繪圖)가 현상되었다.³⁰

젠로쿠국회도는 국, 군, 촌 각각의 공간 수준에서의 경계와 귀속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명확하게 표현되었던 국회도이다. 그것은 순수한 국군도이고 군사용이 중시된 호호국회도와는 그 표출된 이념이 전혀 다르다. 겐로쿠국회도는 에도시대에 제작된 국회도 중에서 가장 ‘국’ 회도다운 국회도라 말할 수 있다.³¹ 이와 같은 국회도 개정의 과정에서 막부가 징수한 겐로쿠국회도는 관찬지도의 성격이 강하며 국경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한다.³²

젠로쿠국회도는 국경연회도와 해제연회도(海際緣繪圖)에 의존해서 편집되었다. 국경연회도는 국회도 중 국경선, 해제연회도는 해안선의 각각의 부분도(部分圖)이다. 국경연회도는 원래 인국과의 국경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일본총도 편집에도 이용되었다. 해제연회도는 일본총도 편집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다. 겐로쿠국회도는 막부의 지시에 의해 인국과의 국경을 상호 확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국 쌍방에서는 국경선이 없는 연회도를 제작하고 그것을 상호 대조하여 국경선을 결정했다.³³

젠로쿠국회도 제작 시에는 국경 관련 주기(注記)의 상술화, 연회도(緣繪圖)³⁴에 의한 인국과의 국경 대조 등의 국경 표현이 중요시되었고³⁵ 특히 해제연회도를 이용해서 연안항로의 실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내륙부와 비

30 川村博忠, 2006, 앞의 글, 34쪽.

31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앞의 글, 98쪽.

32 川村博忠, 2006, 위의 글, 35쪽.

33 川村博忠, 1981, 앞의 글, 58쪽.

34 연회도는 國繪圖 중 국경선의 주변부분만 그린 것으로 정식적으로 경계선에 따라 자른 합회도(合繪圖)에 맞춰 그것을 다시 쌍방국에 맞춰 경계선의 산등선, 도로, 하천경계, 해안 등이 일치하는지를 조회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쌍방의 관리가 협의해서 수정한다. 확인이 끝나면 연회도에 인국의 회도 관리가 서명 날인하고 막부에 제출한다.

35 川村博忠, 2014, 앞의 글, 233~234쪽.

교해서 연안부의 도시, 주기를 상세하게 편집하였다.³⁶

〈표 1〉 國繪圖 및 제품목록 부수 비교³⁷

게이초	쇼호	겐로쿠
國繪圖 3부 향장 3부	國繪圖 2부 향장 2부 도장 2부 성회도 각 1부	國繪圖 2부 향장 2부 變地帳 1부 緣繪圖 각 1부 海際緣繪圖 각 1부

교호국회도(享保國繪圖)는 8대 쇼군 요시무네(吉宗)의 지시로 겐로쿠국회도의 정밀도를 검증해서 미미한 점을 보완하여 재편집한 것이다.³⁸

교호국회도의 편집에서는 인국의 고산(高山)을 목표로 한 망시실측이 시도되어 전국의 국회도를 접합하는 것에 처음으로 방위가 사용되었다. 망시교회법(望視交會法)이라는 삼각측량법과 유사한 방위 실측에 의해 인국 상호 및 이도의 위치 관계를 바로잡았지만 특히 수오나다(周防灘)에 해상망시 삼각점을 설정해서 종래의 일본총도에서 현안이었던 혼슈, 시코쿠, 규슈의 배치를 바로 잡은 것이 주목된다.

교호국회도는 원시실측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에 북방과 남방을 비롯해 본토에서 원시가 되지 않는 이도는 일체 지도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편집을 주안한 일본총도에서도 한반도의 왜관과 그 중계지인 쓰시마만은 예외적으로 고대 전승의 방각·이수(里數)에 의해 도시되었다.³⁹

1723년 교호국회도 제작에서 오키·이즈오시마·이키·고시키시마(靛島)·다네가시마(種子島)·마쓰마에 등의 섬들은 모두 일본 본토에서의 망시교회법에 의해 위치가 정정되었다. 본토에서 망시가 되지 않는 이도는 원칙적으로 일본지도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 섬들은 별도로 작성하였다.

36 川村博忠, 1981, 위의 글, 59쪽.

37 川村博忠, 「正保国絵図の調進と絵図様式の統一化について」, 66쪽.

38 川村博忠, 2014, 위의 글.

39 川村博忠, 1981, 위의 글, 61쪽.

망시교회법에 의해 제작된 교호국회도에서 울릉도·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도 첨부을 하지 않은 것은 울릉도·독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회도에 기재하지 않았다.

〈표 2〉 에도막부 관찬일본도 40

일본도 종류	제작연도	담당자	축척	편집자료	편집방법의 특징
寬永	1639	井上政重	5분 1리	일본도편성을 위한 장수 國繪圖	주기요령 등의 통일
正保	1651 1669	北条正房	3분 1리	正保國繪圖 諸國道度	인국 居城간의 거리
元祿	1702	安藤重玄 井上正岑 松前嘉広 久具正方	4분 1리	元祿國繪圖 국경연회도 해제연회도	엄밀한 국경대조
享保	1725	大久保忠位 北条氏如 件部賢弘	6분 1리	元祿國繪圖 諸國見通목록	인국 見當山望視에 의한 방위측정

텐포시기의 국회도 사업은 기존의 제작 방법과 다른 측면이 있었고, 기존과 같이 일국 단위의 향장이 요구되었고 기존과 같이 배령고만을 기입할 뿐만아니라, 배령고에 신진고(新田高)와 개출고(改出高)가 추가된 실고(實高)의 기입이 요청되었다. 이와 같이 실고 기재에의 변경은 쇼군과 영주와의 관계에서 영지지배권의 인정, 주인고(朱印高)의 증감을 기획하는 것으로 본다.⁴¹

국회도 개정 절차는 국별 담당자로 임명된 국회도과(國繪圖掛)에 요청된 작업은 막부에서 전달한 겐로쿠국회도의 복사본에 겐로쿠시기 이후의 변화를 현지(懸紙)에 의해 수정했을 뿐이다. 막부에서 각현의 국회도과에 겐로쿠국회도를 얹은 종이에 복사한 ‘절회도(切繪圖)’가 전달되면, 그 절회도에 변동된 지역의 과지를 넣어 수정하였다.

국회도 제작 작업은 각 번에서 조달된 지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텐포국회도, 향장은 그 서명을 봐도 모든 책임의 소재는 막부 관료에 있고 막부 스스로 전국 지도를 제작하여 쇼군이 열람하는 형식이 되었다.

40 川村博忠, 1981, 위의 글, 60쪽.

41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앞의 글, 99쪽.

이런 작업과정과 서명의 변화는 국회도, 향장이 가지는 본래의 성격이 크게 변화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국회도, 향장은 지방지도, 토지대장을 중앙정부가 완비하는 것에 정치적 중요성이 크고, 고대 국군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통치 원리를 답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⁴²

III. 국회도(國繪圖) 제작 과정에서의 국경 획정과 독도

1. 국회도(國繪圖) 제작에서의 국경 획정과 분쟁해결

케이쵸, 간에이, 쇼호, 겐로쿠, 덴포 시기의 국회도 징수 경우에는 향장과 같은 세트로 관고에 수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군사적 통치 성격을 가지는 막부의 정치적 지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에도막부가 편집한 일본총도는 공통으로 지방 국가를 국경선으로 명료하게 구획하고, 각 지방을 색별하고 해륙의 교통로와 함께 성을 사각 성형으로 표시하였다.⁴³ 해상항로의 노선 표시가 있는 것은 규슈의 비젠, 사츠마, 오구마, 이키, 쓰시마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⁴⁴ 이점을 고려하면 오키국의 지도상 울릉도 도해를 기재된 것은 어업에서의 주의 사항을 표기한 것으로 울릉도·독도를 배령해서 관리했다는 흔적을 볼 수 없다. 실제 오키국도(78.5x109.8 cm, 그림.5)⁴⁵를 보면 군경선이 그려지고 군명이 기재되어있는데 울릉도·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군별 채색된 회도촌(繪圖村)을 배치하는 것으로 도서에 대한 귀속과 경계를 명시했다. 겐로쿠국회도에서 막부는 자국 영토만을 표현하도록 하명했기 때문에 국경, 군경이 되는 육지에 대한 경계와 자국령에 관한 표현에 한정되었다.⁴⁶

42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위의 글,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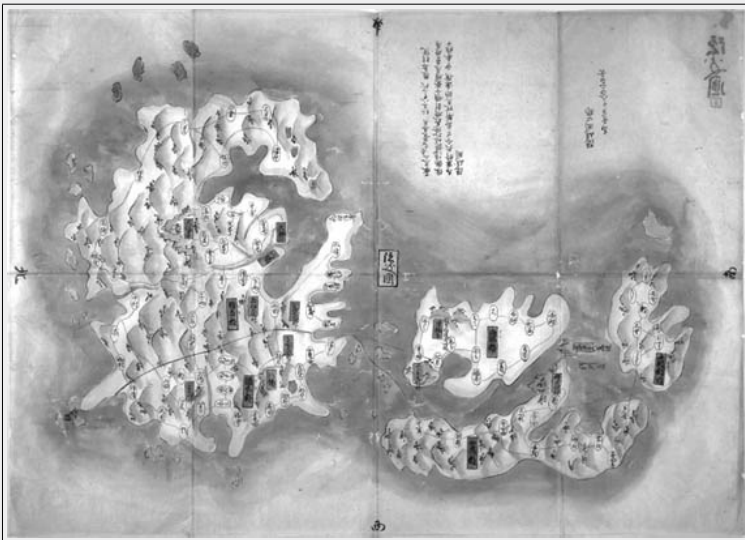
43 川村博忠, 1981, 앞의 글, 59쪽.

44 平成24年度 池田家文庫絵図展, 「日本六十余州図の世界」, 3쪽.

45 平成24年度 池田家文庫絵図展, 「日本六十余州図の世界」, 8쪽.

46 喜多祐子, 2003, 「国絵図にみる絵図村の表現とその分布—周防・長門を事例に—」, 『人文地理第55巻

국회도·성회도는 변을 구속하는 동시에 변이 그것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변은 이미 제출 완료된 국회도·성회도 내용을 자타공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국영토의 경계, 공간을 파악하고 일원적인 지배를 기획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도는 영토 지배권(領知判物)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도의 내용 수정하는 것으로 영토 지배권의 정합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영토 지배권은 에도막부의 쇼군으로부터 각 번주에게 준 문서로 영토 지배권을 인정하는 문서이다. 겐로쿠국회도가 변의 국경 확정을 추진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것에 의해 국회도는 변 영토의 공간을 정의하는 것으로써 영토 의미를 강화시켰다.⁴⁷



〈그림 5〉 오키국도

겐로쿠국회도는 국경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第2号』, 61쪽.

47 新堀道生, 2006, 3, 「国絵図と藩政—秋田藩を事例に」, 『秋田県立博物館研究報告 第31号』, 58쪽.

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⁴⁸ 이 시기의 지도 작성 특징인 국경증문(國境証文)은 백성증문(百姓証文)이라 부러지고, 국경을 근접한 양국의 촌락에서 국경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서 국회도 담당 번에 연명으로 제출하는 증문을 말한다. 국경에 대해 백성으로부터 직접 증문을 징수하는 것은 백성의 인식을 기초하여 국경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겐로쿠국회도 작성 사업의 특징으로 평가된다.⁴⁹ 겐로쿠국회도 작성 사업에 의해 국경질서의 규범이 확립되었고 이런 사업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케이초국회도, 간에이순건사 상납도에서는 해운에 관한 정보는 게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쇼호국회도에서는 항로가 표시되었고, 항구, 곳의 명칭, 만조, 풍향에 의한 선로의 이용 상황 등 해운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⁰ 시마하라 난 이후 서일본 각번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출받아 새로운 일본지도를 만들었고 쇼호국회도 제작에서 각번에 상세한 교통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지도 제작은 교통정보가 빈약한 것을 보충하고 유사시 행군에 이용하기 위한 군사적 관점이 강하게 들어간 지도라 할 수 있다.

겐로쿠시기의 막부는 국경·군경기재 중시의 방침에 의해 회도 제작 기관의 다수가 국회도 작성 과정에서 각현의 인접 국경을 절충하는 데에 많은 심려를 기울였다.⁵¹ 이번 회도제작기관은 막부에서 차용한 쇼호국회도의 복사를 가지고 각현의 인접 국경을 조회한 후 지방 영주의 현지에서 철저한 경계 조사를 행하였다.

국회도 개정에 있어 막부는 개정요강에서 국경 및 군경의 논쟁(論地)을 미해결채로 국회도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쇼호시기의 기존 국회도에서의 미해결 논쟁에 대해서는 그대로 회도 면에 논쟁이 있다

48 杉本史子, 1999, 『領土支配の展開と近世』, 山川出版社.

49 杉本史子, 1999, 앞의 글, 112쪽, 179쪽.

50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앞의 글, 92쪽.

51 川村博忠, 1977, 앞의 글, 40쪽.

고 기재되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국경 논쟁을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막부 재판관을 붙여 새로운 국회도 제작은 어디까지나 논쟁의 결착을 내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⁵² 국경조사 결과, 치구젠(후쿠오카번)에서 6건, 히고(구마모토번)에서는 8건, 이하(伊賀, 津藩)에서는 5건의 국경 논쟁 또는 국경 불명확지의 존재가 나와 히젠과 히고는 경우 논쟁의 전부를 정무회담(內談)으로 해결하였고, 이하인 경우 정무회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막부의 재판으로 처리하였다.⁵³

에도막부 제작 국회도의 변천에 보듯이 겐로쿠국회도에 그려진 범위는 북단 변경에서는 쇼호국회도보다 진전이 되었지만 남단 변경에서는 야에야마제도까지의 류큐열도 전체를 그려 넣었다. 또한 겐로쿠국회도에서는 쓰시마의 북단에 한반도 남단을 그려 넣어, 그 서남단 초량항의 지명과 같이 왜관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에조지역 관련 겐로쿠국회도 개정 때에도 국회도 제작이 되었지만 에조지역 관련 지도제작은 독특하고 추상적인 것이 많다. 사할린, 쿠릴열도 표현은 신화 세계를 기호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국의 지도로 취급하면서 일정등질의 지리적 공간의 일부보다는 교역 대상으로써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에조지역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교역의 대상이 되는 항구의 지명만 기재하고 있다.⁵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지도에 히젠 나고야, 이키, 쓰시마, 부산을 연결하는 항로를 빨간 색으로 넣어서 표기하고 있다. 부산의 왜관과 일본 사이에서의 항로를 나타내고 있는 정도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조선에 있는 일본 재외 상관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본의 일부로 보는 영토를 의도한 표현은 아니다.⁵⁵

52 川村博忠, 1977, 위의 글, 39쪽.

53 川村博忠, 1976, 「元禄年間の伊賀国絵図改正に際する国境論地の処理について」, 『佐世保高専研究報告 第13号』

54 黒田日出男, 2001, 『地圖と繪圖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學出版會, 84쪽.

55 黒田日出男, 2001, 위의 글, 87쪽, 96쪽.

오키국회도에 울릉도, 독도 양도의 기재가 없어도 도해 거리와 도해를 기록한 지역이 모두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⁵⁶은 에도막부의 국회도 제작 과정과 그 성격을 보면 그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다. 먼저 국회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없는 것은 막부영토, 영주영토, 사사(寺社) 영토의 흔적도 없고 배령을 받아디는 증거도 없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면 석고와 향장에 반영되어야 하고, 막부에 보고되어 영토의 변지와 미해결지역의 해결을 통해 일본영토로 복속시켰을 텐데 그런 흔적도 없다. 도해 표기는 국회도 제작 정책에서 교통정보를 상세히 하기 위해 표기한 것이지만 도해 표기와 도해거리 즉 도해이수를 같이 기입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국에의 도해이수는 외국과의 외교와 교역이 허가된 나가사키, 쓰시마번, 마쓰마에번, 사쓰마번을 중심으로 표기되었고 울릉도·독도는 조선 영토이기 때문에 국회도에 울릉도·독도의 도해이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국회도에 나오는 지역은 일본의 고유영토로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일본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이다. 이 국회도 제작 과정에서 울릉도·독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2. 국회도 제작 과정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

1698년 에도막부는 전국의 국회도 제작 기관에 변지 조회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해 전국의 국회도 제작 기관은 전국 영주에게 질, 신사를 포함한 공령(公領)이든 사령(私領)이든 쇼호시기 이후의 변지(變地: 변경된 영토)의 유무를 조사하여 변경된 영토 여부를 보고받았다.

오야·무라가미 양가가 울릉도·독도를 배령을 받았다면 변경된 영토 여

56 日本側作製地図にみる竹島(3)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g.html> (검색일:2020. 8. 8)

부를 보고받아 국회도에 반영을 해야 했었는데 겐로쿠국회도에 울릉도·독도가 반영이 안 된 사실은 오야·무라가와 양가가 울릉도·독도를 배령받았다는 것이 허위이며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에도시대의 토지는 막부령(天領), 번령, 사사령이 있다. 막부령 토지는 번령 토지보다 여유가 있어 연공의 설정과 징수도 그 정도로 엄격하지 않았다. 에도시대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허가되었고, 부의 축적도 인정되었지만, 너무 지나친 상업 매매를 하는 상인, 지나치게 사치하는 상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조적을 없앤 적도 있다.⁵⁷ 이와 같이 에도시대는 특정한 상인이 과도한 부를 축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야·무라가와 양가는 1회성 도해면허를 이용하여 영지를 배령받았다고 허위 보고하면서 울릉도·독도에서의 부를 축적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오야·무라가와 양가가 울릉도 도해면허로 배령받았다고 칭하는 것으로 배타적 권익을 누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울릉도·독도가 일본령이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오야·무라가와 양가도 울릉도·독도를 일본령이라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점도 없었다.⁵⁸

울릉도 도해면허는 이국도해주인장의 형식과도 다르며 1631년부터 실시되는 봉서선제도(奉書船制度)의 로주(老中) 봉서와도 다르다. 이국도해주인장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안남국(베트남)으로 가는 배(自日本到安南國舟也)’라고 도항 목적지가 명기되고 발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울릉도 도해면허 내용 그 자체에 수신인이나 도항 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울릉도 도해면허는 도항이 끝날 때마다 반환하는 1회용이었다.⁵⁹

울릉도·독도는 미곡 수확량(石高)이 부여가 되지 않았고 향장과 영지주인장에 실린 적이 없다. 이런 의미는 두개의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⁶⁰

57 大村大次郎, 2019, 12, 『土地と財産で読み解く日本史』, (株)PHP研究所, 182쪽.

58 小林昌二監修, 2005, 「池内敏 第2章 近世から近代に到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 『日本海歴史大系 全五巻 第四巻 近世篇 I』, 清文堂, 48쪽.

59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社, 42쪽.

60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138쪽.

을 증명하고 있다. 울릉도쟁계에서 막부의 발언을 보면 1625년 당시 막부에 울릉도·독도를 오야·무라가와 양가에 하사했다는 하는 것에 충족시킬 만한 실태와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막부수준에서도 이 시기 울릉도·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⁶¹ 1667년 『은주시청합기』 저자 사이토 간스케(齊藤勘介)는 이 도고(鳥後)의 지도 속에 북의 울릉도·독도를 그리지 않았다. 울릉도·독도는 지배하는 세를 바쳐야 하는 사람이 사는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⁶²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이토 간스케(사이토 호센, 齋藤豊仙)는 이즈모(出雲, 隱州)의 마츠에 관인(松江藩士)으로서 번주의 명을 받고 1667년 가을에 오키섬을 순시하고 관찰한 바와 들은 바를 채록하여 『은주시청합기』를 작성했다. 이 책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 속한 것이고 오키섬은 일본에 속한 것으로 오키섬이 일본의 서북쪽 경계라고 기록하였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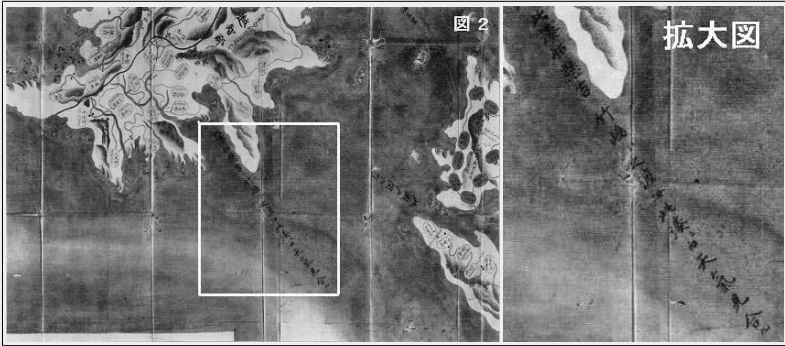
에도시대의 간에이순검사 국회도(1633), 쇼호국회도(1650년경), 오키국도(17세기), 분세이국회도(文政國繪圖, 1826)에 울릉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없지만 도고(鳥後), 후쿠우라에 울릉도 도해가 오키국 후쿠우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술이 있다. 이것은 17세기 돗토리번령 요나고 상인들의 울릉도 도해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며 지역의 경험적 지식이 반영되어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울릉도 도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이후에도 기록만 동일하게 베껴진 것이다.⁶⁴ 일본지도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기 초반까지 울릉도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경험적 지식이 다른 지역에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696년 울릉도쟁계 이후 울릉도 주변 해역은 공백인 채로 남아 있었다.

61 小林昌二監修, 2005, 위의 글, 48쪽.

62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 편역주, 2012, 『은주시청합기』, 인문사, 603쪽.

63 『隱州視聽合記』 卷1 國代記部

64 池内敏, 2012, 위의 글, 122쪽.



〈그림 6〉 「분세이오키국회도(文政總岐國繪圖)」 후쿠우라 주변 확대(시마네현립도서관 소장) 65

일본 정부는 오키국회도에서 울릉도 도해의 기재가 쇼호, 겐로쿠, 텐포에 걸쳐 보여진다고 상정하고 겐로쿠, 교호국회도에서는 쇼호국회도에 비해 해상 도해의 기재가 대폭 줄어들고 그 이후 분세이, 텐포 오키국회도에 울릉도 기재가 있고 에도시대 후기 일본지도에 울릉도, 독도 기재가 있는 것을 보면 막부는 겐로쿠시기 이후도 양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⁶⁵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도해의 기재는 구체적인 교통정보를 기재한 것이지 오키국회도에서 일본영토로 울릉도와 독도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울릉도쟁계(1696), 텐포시기 다케시마일건(1836)에 의해 울릉도·독도는 전국적으로 도해금지가 되었고 조선영토로써 인정하였기 때문에 울릉도·독도에서의 밀어업은 강력하게 처벌되었다.

65 日本側作製地図にみる竹島(3)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g.html> (검색일:2020. 8. 8)

66 日本側作製地図にみる竹島(3)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g.html> (검색일:2020. 8. 8)

IV. 17세기 일본의 울릉도 도해면허의 모순점

국회도 제작 작업은 막부가 전국의 영지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막부는 그 국회도를 바탕으로 막부에선 일본총도를 작성하였고 막부의 판도의식을 반영한 것이다.⁶⁷

울릉도 도해면허 발급 이전에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1620년 쓰시마 상인이 조선국 속도인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한 것에 대해 2명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내용⁶⁸이 실려 있다. 1620년 이전부터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국 속도라고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준 것은 가와카미 겐조에 의해 1618년(元和 4년)으로 되어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1625년(寬永 2년)으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⁶⁹ 결국 그 당시 에도막부가 밀무역을 단속하면서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소다케시마[磯竹島]라고 불리는 동해의 섬이 조선령의 울릉도라는 것은 1614년 조선 동래부와 쓰시마번의 교섭으로 결말이 나있었다. 조선과의 왕래는 쓰시마를 경유하는 해로만을 인정하고 다른 길을 통해 내항하는 것은 해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울릉도에 도해하려는 사람에게 막부로서는 주인장과 같은 형식으로 정식 허가를 내줄 수는 없었다.⁷⁰

막부 직할령인 나가사키 이외에서는 막부가 직접 외국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쓰시마번, 사쓰마번, 마쓰마에번에 명하여 외교를 담당하게 하였다. 에도막부가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국가는 막부 말기 미국 사절 페리의 내항이 있을 때까지 조선이었고 서양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와

67ロナルド・トビ, 2008, 『日本の歴史 第9巻 鎖国という外交』, 小学館, 115쪽.

68 林復齋著, 箭内健次編輯, 1970, 『朝鮮國部百五』 『通航一覽 卷百二十九』, 貿易(潜商罪科, 耶蘇禁制告諭, 商賣金高井銅渡方) 元和六庚申年, 宗對馬守義成, 命によりて, 竹島(朝鮮國屬島)に於て潜商のもの二人を捕へて京師に送る(その罪科いま所見なし), (以下省略)

69 윤희숙, 2016, 『근세조일관계와 울릉도』, 해안, 114쪽.

70 나이토우 세이추우 저, 권오엽·권정 역, 2011, 『나이토우 세이추우의 독도논리』, 인문사, 83쪽.

교류를 하였다. 조일외교의 실무는 막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모두 쇼군의 가신인 쓰시마번주가 맡아 처리하는 형식이었다.⁷¹ 그리고 1630년대 에도 막부는 쇄국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해외 도항선의 경우 1631년 주인장 외에 로주 봉서도 지참하도록 하였고 1635년에는 일본인의 해외도해 금지령에 따라 주인선의 해외 도항도 금지되었다.⁷²

울릉도에 도해, 거주했던 사기사카 야자에몬 부자는 1620년 막부의 명에 따라 파견된 쓰시마번사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1637년 울릉도에 갔다가 한 반도에 표류한 무라카와 이치베 일행을 조선에서 인도받을 때 왜관의 쓰시마 번사는 현재로서 울릉도로 배를 띄우는 것이 막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³

1618년, 1637년, 1666년에 걸친 울릉도에서의 도해 과정에서 3차례 한반도에 표류해 송환되었을 때 ‘표민삼본지서계’를 보면 울릉도를 오랫동안 일본에 속한 섬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설령 그러한 시도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외국의 섬을 억지로 취해 막부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이지 충공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⁷⁴

에도막부는 조선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울릉도에 도해하고 있던 쓰시마 번의 밀어업인을 체포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울릉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되어 탐을 내기 시작했다. 또한 오야는 울릉도에 표류한 계기로 돛토리번 요나고에 돌아와서 수익이 적은 해상운송업(廻船問屋)을 정리하고 울릉도에 나무가 많고 전복을 비롯한 값비싼 어류가 많은 것을 보고 울릉도 출어가 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느꼈다.⁷⁵ 그래서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 도해 이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해 나갔다. 울릉도 도해면허

71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まで』, 報光社, 10쪽.

72 윤유숙, 2016, 앞의 글, 115쪽.

73 池内敏, 2012, 앞의 글, 19쪽.

74 池内敏, 2012, 위의 글, 26쪽.

75 内藤正中, 2000, 「竹島渡海免許をめぐる問題」, 『竹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第二章』, 多賀出版, 42쪽.

는 1625년에 1회용으로 발급된 것이며 이후에 갱신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울릉도 도해면허 발급을 계기로 시작된 소군 알현과 거기에 형성된 막부 내각과의 연줄이 경합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보완했다.⁷⁶

수십 년간 울릉도에 직접 도항하여 그 어업 수익과 특권을 향유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와 그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다.⁷⁷ 따라서 막부와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관계는 공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며 대대로 아베시로고로 가문의 중개 노력에 의해 유지된 사적, 비정기적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 도해면허 허가 로주 서명에는 사카이와 도이는 물론 새로 로주가 된 이노우에, 나가이는 함께 2대 쇼군 히데타다의 측근 그룹이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⁷⁸ 도이 도시카즈를 비롯한 막부의 로주들이 1614년 쓰시마번이 이소다케시마(울릉도) 영유화를 목적으로 조선 정부와 교섭한 일의 경과나, 1617년 이소다케시마 사건 등 조선 영토인 울릉도를 일본의 이소다케시마로 만들고자 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⁷⁹

당시 외국의 도해를 허가하는 주인장에 도항처는 명기되어 있지만 도항이 끝날 때마다 반납하는 일회 한정이다. 그리고 도항 시는 항시 휴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허가장은 도항하는 대표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야가 받았다는 허가장은 오야나 무라카와에게 준 것이 아니고 돗토리 번주에게 준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죽도(다케시마)가 울릉도임을 은폐하고 마치 일본 국내의 미지의 섬에 도해하는 것처럼 꾸민 변형 도해허가이다. 돗토리번이 막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울릉도로 도해하는 데에 필요한 주인장은 없다.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호키국을 영지로 할 때, 도해에 대해 봉서를 작성한 것이라 했다(右島江 渡海付 御朱印無御座候 松平新太郎伯耆國領地の節

76 池内敏, 2012, 앞의 글, 57쪽.

77 윤유숙, 2016, 앞의 글, 113쪽.

78 内藤正中, 2000, 앞의 글, 51쪽.

79 内藤正中, 2000, 위의 글, 51쪽.

渡海の儀 御奉書候).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면허 봉서를 내렸다는 것을 오야·무라가와 양가가 막부로부터 울릉도·독도를 배령(拜領)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울릉도쟁계는 물론 막번체제의 토지제도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봉건사회에서는 모든 토지가 영주의 것이기 때문에 설사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해도 일반 백성에게 준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⁸⁰ 봉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망정 울릉도·독도라는 영토를 개인이 배령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배령의 사전적인 의미는 ‘쇼군이나 번주 등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물(物)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 도해면허는 울릉도에 도항해도 좋다는 막부의 허가서이지, 울릉도를 영지로 하사한다는 문서는 아니다.⁸¹

울릉도 도해면허장에는 이소다케시마가 아니라 다케시마(울릉도)라 되어 있어 이때부터 다케시마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문서는 편지(서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로주가 쇼군의 명령을 도토리번주에 전하고 있고 내용으로 보면 에도막부 노중연서봉서(老中連署奉書)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이다. 이 울릉도 도해면허장과 주인장을 비교해보면, 같은 시기의 막부 공인 이국도해선 발급 도해면허장에는 쇼군의 주인(朱印)을 찍은 높은 격식의 문서로 도해 때마다 발급되어 귀국 후에 반납하는 것이다. 주인장의 형식은 극히 간결하고 고문서학 상 울릉도 도해면허장과 전혀 다른 양식의 문서이다.⁸²

1696년 조일정부는 울릉도쟁계를 계기로 공식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였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

통항일람 137권에서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울릉도쟁계 사건 당시의 쓰시마번주와 조선정부의 왕복문서에 대한 설명⁸³이 있으며 여기서

80 内藤正中, 2005, 「竹島固有領土論の問題点」, 『郷土研』 69号, 6쪽.

81 윤유숙, 2016, 앞의 글, 87쪽.

82 竹内猛, 2010, 앞의 글, 14~15쪽.

83 林復齋著, 箭内健次編輯, 1970, 「朝鮮国部百十三 竹島」, 『通航一覽 卷之百三十七』 慶長十七壬子年, 宗対馬守義智より朝鮮国東萊府使に書を贈りて、竹島は日本属島なるよしを諭(さと)せしに、彼許さず、

조선정부는 울릉도를 조선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도에 시마네현 오키군 아마초에 있는 무라카미가문 창고에서 발견된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는 17세기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반박해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각서의 출처가 오키 도젠(島前)의 공문서 담당이던 무라카미가문이고, 안용복을 직접 심문하며 작성한 진술 자료로 이 문서를 당시 오키의 관할원이었던 이 시미국(石見國)에 제출했던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공신력은 높다. 안용복은 다케시마가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내의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같은 강원도 내의 자산도(독도)라는 섬이 있다. 이것은 마쓰시마라고 하고 팔도지도에 쓰여 있다⁸⁴고 진술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자산도가 독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임을 증명하라는 억지를 부리는데 안용복의 진술서에 의해 자산도는 마쓰시마로 독도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쟁계에서 에도막부가 돛토리번에 7개조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돛토리번에서 올린 답변서에는 울릉도가 돛토리번의 인슈(因州)·허쿠슈(伯州)에 소속하는 섬이 아니고, 울릉도와 독도는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 (1) 울릉도[다케시마]가 인슈[因州]·허쿠슈[伯州]에 소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호키국 요나고의 주민 오야 쿠에몬[大谷九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라는 허는 자들이 도해한 것에 관해 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영주일 때 봉서로서 명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도해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 (2) 울릉도의 둘레는 대략8, 9리쯤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よて猶使書往復に及ぶ(中略).此年(元祿九年)夏,朝鮮人十一人因幡州に來り,事を東武に以てせしに,鈞命して是を遂回されし事あり.

84 安龍福申ハ竹嶋ヲ竹嶋と申朝鮮國江原道東萊府ノ内ニ鬱陵島と申嶋御座候。(是)ヲ竹ノ嶋と申(由)申候。則八道ノ圖ニ記之所持仕候。松嶋ハ右同道ノ内子山と申嶋御座候。是ヲ松嶋と申由是ハ八道ノ圖ニ記申候。

- (3) 울릉도에 어업을 위해 가는 것은 2, 3월경이며 요나고에서 출선하여 매년 갑니다. 그 섬에서 전복, 강치 등을 잡는 크고 작은 배 2척이 갑니다.
- (4) 4년 전인 1692년(申年)에도 조선인들이 와 있기에 우리 선장들이 조선인 2명을 데리고 요나고로 돌아왔고 그것도 보고하여 나가사키로 보냈습니다. 1694년(戊年)에는 바람이 썰어 그 섬에 도착하지 못한 것도 보고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도해하였더니, 이국인이 많이 보였기에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독도[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잡고 돌아왔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5) 1692년(申年)에 조선인이 왔을 때 배 11척 중 6척은 태풍을 만나 조난당하고 남은 5척은 그 섬에 머물렀는데 사람 수는 53명이었습니다. 1693년(酉年)에는 배 3척에 사람은 42명이 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배와 사람이 보였으나 배를 대지 못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6)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는 그 외 양국[이나미국과 호키국]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⁸⁵

에도막부는 이 답변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을 내린다. 울릉도라는 곳이 돛토리변에 속한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일본인

85 「亥十二月廿四日竹島の御尋書の御返答書」, 塚本孝, 1986.4, 「竹島関係旧島取藩文書及絵図(上)」, 『レファレンス』, 81쪽.

1. 竹島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伯耆国米子町人大室九右衛門、村川市兵衛と申者渡海仕候儀、松平新太郎領国の節、以御奉書被仰出候旨承候、其以前渡海仕候儀も有之様には及承候之共、其段相知不申候事
2. 竹島廻凡八九里程之有之由、人居無之候事
3. 竹島之魚採参候時節は二月三月比、米子出船毎年罷越候、於彼島鮑みちの漁羅仕 候船数大小二隻参候事
4. 四年以前申年朝鮮人彼島之参居候節、船頭共参逢候儀其節御届申上候、翌酉年も朝鮮人参居申、内船頭共逢朝鮮人二人連候て米子へ罷滞、其段も御届申上長崎之相送申候、戊年は遭難風彼島着岸不仕段御届申上候、当年も渡海仕候处、異国人数多見え申に付着岸不仕罷滞候節、松島にて鮑少々取申候、右の段御届申上候事
5. 申年朝鮮人参候節、船十一隻の内六隻遭難風、残五隻は彼島に留り、人数五十三人居申候、酉年は船三隻人数四十二人居申候、当年は船数余多人も相見之申候、着岸不仕候付分明無御座候
6. 竹島松島其外两国之附屬の島無御座候事

이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시대에 요나고의 주민들이 이 섬에 어업하기를 위해 어업을 허가하였다. 지금 그곳의 지리를 헤아려보면 이나바에서 160리이고 조선에서는 40리 정도이다. 거리로 판단하면 일찍부터 그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의심할 수 없다. 혹시 일본이 무력으로 취하면 수중에 들어 올 수도 있으나 이 작은 쓸모없는 작은 섬이 원인이 되어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략이 아니다. 더욱이 당초에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다시 돌려준다고 말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일본인이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 현재의 일본 정부는 이전과는 달라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를 얻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을 조선에 잘 전하라⁸⁶는 내용이다.

에도막부에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때,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울릉도·독도를 처음부터 조선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처음부터 에도막부가 돛토리번주에게 울릉도·독도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며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독도를 배령받았다는 말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에도시대의 게이쵸, 간에이, 쇼호, 겐로쿠, 덴포국회도의 제작 과정에서의 국경문제 해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 국회도는 관찬지도로 지방영주와

86 林復齋著, 箭内健次編輯, 1970, 『通航一覽 卷百三十七』, 27쪽.

竹島の地因幡に屬せりといえども、また我が人居住の事なし、台徳君の時において米子村の衛人其島に漁船事を願した依り、是を許されしせ、今其地理を因に因幡を去るもの百六十里許、朝鮮を距る四十里許なり、これ曾て彼が他界たる其疑なきに似たり、国永若し兵威を以てこれに臨まは、何を求むとして得てからさらに、但無用の小島の故を以て、好みを逆国に失する、計お得たるに非ず、しかも其初、是を枯れに取り非ざる時は、今また是を返すを以て詞とすべからず、誰我人往き漁をするを禁せらるべきのみ、今朝議以前に同じからず、其相ふてやまさらんよりは、各無事なんにしかじ、宜しく此意を以て彼国に諭すへしと言うをもつてせらる。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였다. 국회는 국경 취급을 중시하는 지도로 국경은 인접국 쌍방에 의한 상호확인을 통해 국경분쟁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도 개정의 과정에서 막부가 징수한 국회도는 관찬지도의 성격이 강하며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에도막부는 국회도 개정 작업에서 국경 및 군경의 논쟁을 미해결채로 국회도 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쇼호국회도에서는 기존에 미해결 논쟁, 분쟁으로 기재된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에도막부는 국경문제 해결 방침과 변경된 영토 조회를 통해 국경을 확정하였고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준다. 특히 에도막부는 17세기 전후로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울릉도쟁계에서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돛토리번담번서 조회, 조선정부와의 문서왕래 등을 통해 양국 국경의 상호 확인에 의해 국경분쟁을 해결하였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국회도에 명기하지 않았다.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배령받았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 대상으로부터 독점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진 일이다. 도해면허는 이국도해주인장과의 형식이 다르며 도해면허는 도항이 끝나면 반환해야 하는 1회용이다.

그러나 17세기초 에도막부 로주들이 울릉도를 영유화하는 목적으로 조선정부와 교섭을 하였고 일본인의 밀어업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경제적 가치를 느껴 에도막부 로주들이 돛토리번주에게 도해면허라는 봉서를 내리면서 마치 일본 국내 미지의 섬을 개척하는 식으로 도해하였다.

울릉도·독도는 미곡 수확량이 부여가 되지 않았고 향장에 영지주인장에 실린 적이 없어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배령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에도시대의 토지는 막부, 번주, 사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배령할 수 없고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없는 체제였다.

에도막부는 쇄국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나가사키, 쓰시마번, 사쓰마번, 마쓰마에번을 통해 외교, 무역을 담당하였고, 유일하게 국교를 맺은 조선과의 무역은 쓰시마번이 담당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조선과의 왕래는 쓰시마를 경유하지 않으면 해적으로 간주되었고 울릉도·독도 도해는 불법이다.

결국 1696년 울릉도쟁계를 통해 조일간 국경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이전, 이후 일본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지 않았다.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으로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였고 에도막부가 돗토리번주에게 울릉도·독도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며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독도를 배령받았다는 말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 편역주, 『은주시청합기』, 인문사, 2012.
- 나이토우 세이추우 저, 권오엽·권정 역, 『나이토우 세이추우의 독도논리』, 인문사, 2011.
- 윤유숙, 『근세조일관계와 울릉도』, 혜안, 2016.
- 신동규, 「근대이행기 일본의 관찬지도로 본 영토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일본연구』 18, 2012.
- 이상태,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3.
- 호사카 유지,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7, 2005.
- 『隱州視聽合記』.
-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社.
- 大村大次郎, 2019. 12, 『土地と財産で読み解く日本史』, (株)PHP研究所.
- 岡嶋正義, 1828, 『竹島考 上・下』.
- 織田武雄, 1973, 『地圖歴史』, 講談社.
- 川村博忠, 1981, 「江戸幕府撰日本図の編成について」, 『人文地理 第33巻 第6号』.
- 平成24年度 池田家文庫絵図展, 「日本六十余州図の世界」.
- 川村博忠, 「正保国絵図の調進と絵図様式の統一化について」.
- _____, 1976, 「元禄年間の伊賀国絵図改正に際する国境論地の処理について」, 『佐世保高専研究報告 第13号』.
- _____, 1977, 「元禄年間の国絵図改訂と新國絵図の性格について」, 『人文地理 29-6』.
- _____, 2006, 「元禄国絵図における国境筋の表現要領について」, 『歴史地理学 42-3(199)』.
- _____, 2014, 『江戸幕府撰日本総図の研究』, 古今書院.
- _____, 1990, 『國繪圖』, 日本歴史叢書.
- 海野一雄, 2001, 『ちずのこしかた』, 小學館スクウェア.
- _____, 1999, 『地圖に見る日本』, 大修館書店.
- 川村博忠, 2010, 『江戸幕府の日本地圖』, 吉川弘文館.

- 金田章裕・上杉和央, 2012, 『日本地圖史』, 吉川弘文館.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北澤正誠, 1881, 『竹島考證 上・中・下』.
- 喜多祐子, 2003, 「国絵図にみる絵図村の表現とその分布-周防・長門を事例に-」, 『人文地理第55巻第2号』.
- 黒田日出男, 2001, 『地圖と繪圖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學出版會.
- 小林昌二監修, 2005, 「池内敏 第2章 近世から近代に到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 『日本海歴史大系 全五巻 第四巻 近世篇 I』, 清文堂.
- 竹内猛, 2010, 『竹島 = 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まで』, 報光社.
- 田中阿歌麻呂, 1908, 「竹島の位置新測」, 『地學雜誌』 239号.
-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青丘學叢』, 第3号 青丘學界.
- _____, 1931, 「鬱陵島の名稱に就て」, 『青丘學叢』, 第4号 青丘學界.
- 杉本史子, 1999, 『領土支配の展開と近世』, 山川出版社.
- 内藤正中, 2000, 「竹島渡海免許をめぐる問題」, 『竹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第二章』, 多賀出版.
- _____, 2005, 「竹島固有領土論の問題点」, 『郷土研』69号.
- 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歴史地理』 38巻 3号.
- _____, 1931, 「竹島について」, 『歴史地理』 56巻 1号.
- 林復斎著, 箭内健次編輯, 1970, 『通航一覽 全8冊・通航一覽續輯 全5冊』.
- 平成24年度 池田家文庫絵図展, 「日本六十余州図の世界」.
- 半田和彦, 1981. 3, 「元禄国絵図製作覚書」, 『秋田博報』6号.
- 新堀道生, 2006. 3, 「国絵図と藩政-秋田藩を事例に-」, 『秋田県立博物館研究報告 第31号』.
- ロナルド・トビ, 2008, 『日本の歴史 第9巻 鎖国という外交』, 小学館.
- 和泉清司, 2005. 11, 「近世初期一國郷帳の研究 - 正保郷帳を中心に-」, 『地域政策研究 第8巻 第2号』, 高崎經濟大學地域政策学会.

국문초록

에도시대의 게이쵸(慶長), 간에이(寬永), 쇼호(正保), 겐로쿠(元祿), 텐포국회도(天保國繪圖)의 제작 과정에서의 국경문제 해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 국회도는 국경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지도로 국경은 인접국의 상호확인을 통해 국경분쟁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도 제작은 군사적 정치적 통치의 성격이 강하며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에도막부는 국회도 제작 작업에서 국경문제 해결 방침과 변경된 영토 조희 등을 통해 국경 확정을 하였고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국회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해준다. 특히 에도막부는 17세기 전후로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울릉도쟁계를 통해 양국 국경의 상호 확인에 의해 국경분쟁을 해결하였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국회도에 명기하지 않았다.

울릉도·독도는 미곡 수확량이 부여가 되지 않았고 향장에 영지주인장에 실린 적이 없어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배령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에도시대의 토지는 막부, 번주, 사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배령할 수 없고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없는 체제였다.

에도막부는 쇄국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무역은 쓰시마번이 담당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조선과의 왕래는 쓰시마를 경유하지 않으면 해적으로 간주되었고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도해는 불법이다.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배령받았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 대상자로부터 독점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진 일이다. 도해면허는 이국도해주인장과의 형식이 다르며 도해면허는 도항이 끝나면 반환해야 하는 1회용이다.

1696년 에도막부 울릉도 도해 금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고, 돗토리번주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며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독도를 배령받았다는 말은 허위

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독도, 國繪圖, 울릉도 도해면허, 국경, 울릉도쟁계, 배령, 울릉도 도해 금지령

ABSTRACT

An analysis on the Border Problems and the Perception of Dokdo Islands at the Japanese Kuniezu(國繪圖)

SEO, Inwon

(Planning Bureau Department Manager,

Korean Found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We analyzed the solution of border problems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Kuniezu(國繪圖) in Edo period. This map emphasizes to solve border problem, the border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resolving border disputes through mutual confirm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cartography has a strong nature of military political rule and functions to curb the occurrence of border disputes.

The Edo Shogunate confirmed the border through the policy of solving the border problem and the changed territorial inquiry in the cartography work. The fact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not included in this map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y.

Ulleungdo and Dokdo has not been given rice yields and has never been listed on the manor's seal, so it can not be said that Oya and Murakawa have been receipt Ulleungdo and Dokdo. In addition, the land of the Edo period was managed by the Shogunate, the lord, and the temple, so it was a system that individuals could not be able to receipt and could not make huge profits.

The Edo Shogunate was regarded as a pirate if it did not pass through Tsushima because Tsushima was responsible for diplomacy and trade with Joseon while it was in seclusion policy, and Oya and Murakawa sails for Ulleungdo and Dokdo was illegal.

The fact that Oya and Murakawa were given a Voyage Licenses of Ulleungdo was falsely decorated to take exclusive rights from competitors in order to pursue exclusive rights. The Voyage Licenses of Ulleungdo is different from the formal license, and the Voyage License is disposable that must be returned after voyage.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it is false that Oya, Muraka were receipt Ulleungdo and Dokdo by the Edo Shogunate's policy of seclusion, land system, cartography, and a Prohibition order of Voyage to Ulleungdo and Dokdo.

Keywords

Dokdo, Kuniezu(國繪圖), A Voyage Licenses of Ulleungdo, Borders, Ulleungdo Conflicts, Receipt of Territory, A Prohibition order of Voyage to Ulleungdo.